

제23차 상임전국위원회 안건

2025. 7. 1.(화)



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(안)

제23차 상임전국위원회의(2025. 7. 1.)

I. 의결주문

-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(안)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임명(안)

- 총 5인

※ 별첨 자료 참조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96조 제2항 및 제5항

[당헌 제96조(비상대책위원회)]

-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1. 비상대책위원장
 2. 제96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
 3. 원내대표
 4. 정책위원회 의장
- ⑤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
별첨

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(안)

□ 총 5인

| 구분 | 성명 | 주요 학·경력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|---|----|
| 비상 대책 위원 |  박 덕 흠 (53년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○ 제19,20,21,22대 국회의원(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) ○ 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○ 現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| |
| |  조 은 희 (61년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 ○ 제21,22대 국회의원(서울 서초구갑) ○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○ 現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| |
| |  김 대 식 (62년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日 오타니대학 대학원 문학 박사 ○ 제22대 국회의원(부산 사상구) ○ 前 여의도연구원 원장 ○ 前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| |
| |  홍 형 선 (68년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○ 前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○ 前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○ 現 국민의힘 경기 화성시갑 당협위원장 | |
| |  박 진 호 (90년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 석사 ○ 前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○ 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○ 現 국민의힘 경기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| |

당규 개정(안)

제23차 상임전국위원회(2025. 7. 1.)

I. 의결주문

- 당규 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의결(안)

- 당규 <전국위원회 규정>, <당 국회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> 개정(안)

| 구분 | 주요 개정 내용 |
|---|---|
| 전국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 | ○ <시·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정수 산출 기준> 최신화 -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수 기준 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수 기준 |
| 당 국회의장· 부의장·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10조 | ○ <후보자 등록> 관련, 국회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|

※ 별첨자료 참조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23조

[당헌 제23조(기능)]

-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2. 당규의 제·개정 또는 폐지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당규 <전국위원회 규정> : 별지 제1호

2. 시·도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정수 산출 기준

| 시·도 | 현행 (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수 기준) | | | 개정안 (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수 기준)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유권자수 | 구성비 | 시·도선출 전국위원수 | 유권자수 | 구성비 | 시·도선출 전국위원수 |
| 서울 | 8,477,244 | 19.3% | 13 | <u>8,310,021</u> | <u>18.8%</u> | 13 |
| 부산 | 2,958,290 | 6.7% | 7 | <u>2,884,261</u> | <u>6.5%</u> | 7 |
| 대구 | 2,071,120 | 4.7% | 5 | <u>2,051,656</u> | <u>4.6%</u> | 5 |
| 인천 | 2,500,690 | 5.7% | 7 | <u>2,582,765</u> | <u>5.8%</u> | 7 |
| 광주 | 1,208,263 | 2.7% | 3 | <u>1,199,920</u> | <u>2.7%</u> | 3 |
| 대전 | 1,237,183 | 2.8% | 3 | <u>1,236,801</u> | <u>2.8%</u> | 3 |
| 울산 | 953,648 | 2.2% | 3 | <u>934,661</u> | <u>2.1%</u> | 3 |
| 세종 | 263,388 | 0.6% | 3 | <u>301,297</u> | <u>0.7%</u> | 3 |
| 경기 | 11,067,819 | 25.2% | 15 | <u>11,595,385</u> | <u>26.2%</u> | 15 |
| 강원 | 1,323,766 | 3.0% | 5 | <u>1,331,959</u> | <u>3.0%</u> | 5 |
| 충북 | 1,354,046 | 3.1% | 5 | <u>1,372,679</u> | <u>3.1%</u> | 5 |
| 충남 | 1,781,956 | 4.0% | 5 | <u>1,825,472</u> | <u>4.1%</u> | 5 |
| 전북 | 1,542,579 | 3.5% | 5 | <u>1,517,738</u> | <u>3.4%</u> | 5 |
| 전남 | 1,592,850 | 3.6% | 5 | <u>1,565,232</u> | <u>3.5%</u> | 5 |
| 경북 | 2,282,938 | 5.2% | 7 | <u>2,224,011</u> | <u>5.0%</u> | 7 |
| 경남 | 2,823,511 | 6.4% | 7 | <u>2,779,542</u> | <u>6.3%</u> | 7 |
| 제주 | 554,956 | 1.3% | 3 | <u>566,611</u> | <u>1.3%</u> | 3 |
| 합계 | 43,994,247 | 100% | 101 | <u>44,280,011</u> | <u>100%</u> | 101 |

□ 당규 <당 국회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 10 조 (후보자 등록 등) ①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2일에 한다.</p> <p>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일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당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당 국회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.</p> | <p>제 10 조 (후보자 등록 등) ①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2일에 한다.</p> <p>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일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당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당 국회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.</p>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| <p>⑤ <u>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.</u></p> |